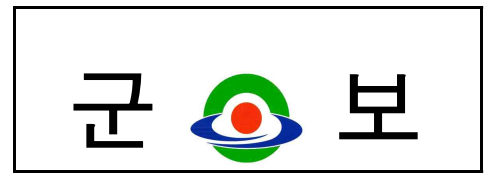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74호 2022. 6. 27.(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2-924호)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2-92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공인 폐기 및 신조(개각)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재등록) 공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및 신조 사유 : 마멸에 인한 폐기 및 신조
2. 폐기 및 신조 개시일 : 2022 년 6 월 27 일
3. 폐기 및 신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22년 6월 27일

예 천 군 수

폐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민원실호명면장 의인전용	전서체 2.0cm×2.0cm		

신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신조	민원실호명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호명면
신조	민원실호명면장 의인전용	훈민정음체 2.1cm×2.1cm		호명면 출장소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7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표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제외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업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

나. 지원대상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

- 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다.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관한 별표 삭제

-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중앙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따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minjee91@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와 같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소상공인기본법</u> 」 제3조제2항----- ----- ----- ----- -----.
제3조(특례보증)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에 <u>주소와 사업장</u> 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조(특례보증) ① ----- ----- <u>사업장</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 ----- ----- ----- -----.
1.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자가 <u>주소 또는 사업장</u> 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1. ----- <u>사업장</u> ----- -----.

다만, <u>주소 또는 사업장이</u>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2. ~ 4. (생략)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u>별표와 같다.</u>	--- <u>사업장</u>----- ----- -----. 2. ~ 4. (현행과 같음) 제7조(제외대상) ----- ----- -----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른다.</u>
--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업종(제7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홍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